

영등포구의회
제15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1. 2. 24.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45호로 2011년 2월 10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구민의 정서생활을 함양하고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설립된 영등포구립여성합창단은 매년 정기연주회를 개최하고 각종 경연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바, 전공자를 위촉하여 정당한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더욱 수준 높은 합창단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수당, 여비 지급대상자를 지휘자, 반주자에서 단원, 객원출연자로 확대(안 제7조제2항)
-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용어 정비(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나. 예산조치 : 2011년 세출예산 편성

다. 서울시 자치구 전공자 수당지급 사례

- 예산편성 : 14개구

- 수당지급 : 최하 월 150천원 ~ 최고 300천원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7조제2항 예술단원의 수당 및 여비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코자 제출된 조례안 임.
- 2005년 8월 26일 창단된 영등포구립여성합창단은 그동안 각종 문화행사 출연과 경연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국민의 정서생활 함양과 문화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바, 구립여성합창단 지휘자, 반주자에게 지원하던 수당을 단원, 객원출연자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한층 수준 높은 합창단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임.
- 그 외 일부 조항의 문구를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참고자료 : 관련법령

관 련 법 령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 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개정 2008.2.29>